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678호로 2026년 1월 19일 전승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권을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민의 정상적인 사용이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공정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용권의 부정 취득 및 판매 등 금지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사용권의 부정 취득 및 판매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4호)

다. 무단으로 양도 또는 대여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향후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후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6.1.20.~2026.1.25.)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을 금지하고자 발의됨.

### ○ 종합의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sup>1)</sup>가 신설(2023.8.8.)되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에서는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

1)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육관광부 장관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민 전체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sup>2)</sup>에서는 부정판매한 자의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사용권의 부정취득 및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이나 사전 승인 없는 사용권의 양도·대여 등을 통한 부정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권을 부정취득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 사용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립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4.3.26.)<sup>3)</sup>한 바 있음.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sup>4)</sup>은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여 지

2)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3)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제161조(공공시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역 주민이 해당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안 제11조제3항 후단신설 조항** 관련하여 상위법에서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제3자”에 대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정판매 행위는 필연적으로 이를 양도·대여 받아 이용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며 부정이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상위 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sup>5)</sup>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 제4조의2제3항**의 “영구적”이라는 표현은 제재의 범위가 다소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5)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참 고 자 료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